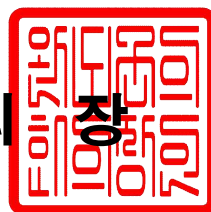


완도군의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완도군의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의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2. 발 의 자 : 김 양 훈 의원 외 8명

3. 제정이유

- 완도군의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의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안 제7조, 안 제8조)
- 협력체계 및 포상(안 제9조, 안 제10조)

5.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5. 26. ~ 2025. 5. 30.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회행정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01,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1부. 끝.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 등”이란 완도군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공무원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의장의 책무)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방향과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연구 및 조사 사업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

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 등에게 「완도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

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